

부산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19가합500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8. 11. 23. 접수 제351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8. 11. 23. 접수 제351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경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15. 1. 12.	F	270,000,000	2016. 1. 12.
2	2015. 1. 27.	G	270,000,000	2018. 1. 26.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본인’은 소외 회사를, ‘연대보증인’은 B을 지칭한다).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보증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계속해서 갱신되어 오던 중, 소외 회사는 2019. 5. 14.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E은 2019. 7. 1. 원고에게 위 사고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0. 11. E에 원고의 대출원리금 합계 519,417,463원(= 원금 510,000,000원 + 이자 9,417,4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B은 2018. 11. 15.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8. 11.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35163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165호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B은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8. 11. 15.로부터 6개월가량이 경과한 2019. 5. 14.경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위 사전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연수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 세무서에 신고한 2018년 하반기 매출액(확정)은 183,948,000원으로 2018년 상반기 매출액(확정) 760,307,000원보다 약 1/4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2019년 상반기 매출액(확정)은 더욱

감소하여 18,181,000원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가까운 장래에 소외 회사가 E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이로 인하여 B이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 나아가 실제로 소외 회사가 2019. 5. 14. 보증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평구청, 사천시청, 동래구청,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²⁾, B은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용보증약정의 갱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갱신된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재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은 과세정보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정이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과세정보를 뒤집고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건전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금융실무에 따라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금 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산의 후대로의 상속이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선조로부터 상속되어 내려오는 선산을 아버지인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B(J생)은 만 46세, 피고(K생)는 만 11세에 불과하였던 점, B은 2018. 6. 19.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인접 토지 '사천시 I'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피고 집안의 선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선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사해성이 부인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민, 판사 강윤진, 판사 전유상

[별지]

1. 사천시 L 입야 $1,488\text{m}^2$ 중 446/1,488 지분
2. 사천시 M 입야 $3,881\text{m}^2$

1) 원고는 당초 H 주식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2019. 12. 9.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2)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당초 ‘사천시 I’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인 2018. 6. 19.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